

◆ 문화칼럼 ◆

판소리·강강술래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엔산하 전문기관으로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하였고, 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미국, EU 등을 비롯한 총9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WIPO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시작장애인 위한 저작권의 대폭적인 제한과 예외 인정, 방송사업자 저작권집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적 보호 등이다.

이중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남미 등 개도국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WIPO는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를 지난 2001년 4월 설립한 이래 2009년 12월까지 총15차의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존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은 민간전승물로도 불리는데 1982년 WIPO 모델규정에서는 민간전승물을 “한 국가 내의 공동체 또는 그 공동체의 전통, 예술적 기법에 영향을 받은 개인에 의해서 유지·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의 특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제품(products)’이라는 표현이다.

민간전승물을 저작권적으로 보호를 하려다보니 그 개념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실체성을 띤 ‘제품’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간전승물의 예는 우리의 경우 판소리, 농악,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처용무, 남사당 등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위 정의에서와 같은 특성의 제품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들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은 첫째 보호대상(무엇을 전통문화표현물로 보호할 것인가), 둘째 보호의 범위(어떠한 행위를 침해행위로 볼 것인가), 셋째 보호수단(어떠한 방법과 시스템으로 보호할 것인가), 넷째 손해배상(누가 보호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호기간(얼마동안 보호할 것인가)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WIPO는 1982년 UNESCO와 함께 개별국들이 참조할 수 있는 모델규정을 제시한 바 있고, 2005년에는 이를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서 이에 대해 각국의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기 주요 쟁점 중 어느 하나도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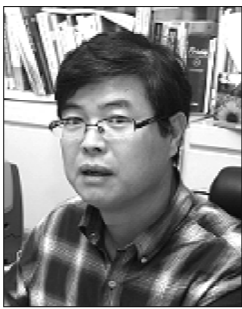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해 저작권적 보호를 주장하는 남미 등 개도국의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개도국의 입장에 있느냐 선진국의 입장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승되어 오고 있는 문화에 대해 경제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저작권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기본 입장은 문화는 전세계 인류가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특정 국가나 민족이 배타적 권리로써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민간전승물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창조된 제품이나 문화상품은 당연히 저작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문화유산 자체



김진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에 대해 저작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물놀이의 예를 보자. 1978년 김덕수 등에 의해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공연이 선을 보였을 때 그것은 전통 농악가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으로서 저작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물놀이의 주된 구성요소인 농악가락 자체는 전승문화로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이를 재해석·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내었기에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저작권적 권리를 뒤로 하고 우리의 가락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했고 30여년이 지난 지금 사물놀이는 하나의 작품을 넘어 문화장르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만약 사물놀이에 저작권적 보호를 가했더라면 사물놀이는 하나의 작품에 그치고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현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사물놀이가 저작권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물놀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곡이 창작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범훈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이라 하겠다.

문화는 특정한 집단 소유 대상이 아니다

민간전승물에 대해서 저작권적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문화와 문화상품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오류라고 하겠다.

문화는 이미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한 집단 소유 대상이 아니다. 문화의 특성은 바로 강물과 같이 흐르는 것에 있다. 시간적으로 흐르는 것을 ‘전승’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으로 흐르는 것을 ‘전파’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전승’은 세대간의 공유를 의미하고 ‘전파’는 이웃과의 공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화에 소유의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흐르는 강물에 댐을 쌓는 것과 같이 문화의 흐름은 막혀버리고, 세계는 굳은 문화유산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것이다.

2005년에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놓고 중국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문화유산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오류의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 문화상품은 저작권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더욱 많은 문화상품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화상품들이 모이고 쌓여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현상인 문화와 개인적 창조활동의 결과인 문화상품은 끊임없이 상호 교류한다. 여기에 저작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개별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여야 하지만 사회적 현상인 문화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적 개념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WIPO에서 남미국가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적 보호에 대해 우리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조들에 의해 물려받은 문화유산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저작권이 나서야 할 자리는 개별 문화상품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더욱 풍부한 문화의 강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 교육법률산책 ◆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



김도현 변호사 dhkim@shinkim.com

〈학력〉
서울대학교 법대대학 졸업(1999)
북경화공대학 연수(1998)
한국해양대학교 형인물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7)
상해 화동정법대학 연수(2008)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1997)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前 검사(부산지법검찰청, 의정부지법검찰청 고 양자청 등)
現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9-)
저서: ‘중국반독점법’ (2009, 법문사)

A씨는 20년간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그 중 최근 10년 동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A씨는 자신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이바지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선거위원회로부터 입후보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선거위원회에 입후보자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선거위원회는 관련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을 제시하였다.

A씨가 동 조항을 살펴보니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기에 자신 또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을 담당해 왔으므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였으나 선거위원회 측은 동 조항의 자격요건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므로 일반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결국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A씨가 교육감 입후보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 동 법률조항은 헌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인 공무원임권 혹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일까?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구별되어야 하고, 교육감의 주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교원경력이나 교육공무원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된 제24조 제2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나 교육자치의 목적에 위배되며, 특

정경력을 가진 자와 그러한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반드시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야만 교육현실을 알 수 있고, 교육정책을 수행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 법률은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왜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하여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교육에 관한 행정적 사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호 판결 참조)

결국 동 법률조항은 교육감의 중요한 교육사무기관성에 기초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에 기초한 경험과 합리적 정책결정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교육 관련 경력만을 가진 사람에게 입후보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용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씨와 같은 능력있고 의욕있는 전문가들이 교육감 후보조차 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0도회 회전 의자체어

이노체어와 함께라면 허리나이가 젊어집니다.

일반의자 기능

간이침대 기능

스트레칭 기능

백근운동 기능

축적 제9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고객상담
032-624-2636